

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내용

1. 개정 이유

- 정부의 「지방 미분양대책 추진」(‘08.6.11.)중 금융규제완화를 위한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

2. 주요 골자

-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모기지보험(MI)에 가입하는 경우 현재 주택담보가치의 20%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(LTV)를 추가 인정하던 것을 25% 이내로 5%p 상향 조정
 - 이 경우 은행·보험 등의 모기지보험 보증을 포함한 LTV 한도는 현행 최대 80%에서 최대 85%로 5%p 확대
- 또한 주택담보대출 LTV한도 산정시 모기지보험 적용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로 제한한 것을 폐지

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<별표> 개정내용

	현행	개정(안)
대출차주	-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	→ 현행 유지
주택소재지	- 비투기지역 소재	→ 현행 유지
주택규모	-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주택	→ 요건 폐지
대출만기	- 만기 10년 이상의 분할상환대출	→ 현행 유지
보증범위	- 담보가치의 20%이내	→ 담보가치의 25%이내 (모기지보험 포함 최대 LTV 85%이내)

* 모기지보험은 '07.7월 은행·보험·상호금융·저축은행·여전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

3. 시행일 등

□ 시행일 : '08년 6월 30일

○ 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사전예고 생략

* 「금융위원회규정제개정등의사전예고운용규칙」 제2조 2호에 의거
규정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

** 개정 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원장결재에 의거
시행하고 금융위 앞 사후 보고

<붙임>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(시행사 및 재건축·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)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	
<p><별표18></p> <p>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담보인정비율(LTV)</p> <p>2. (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)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<u>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0%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라. (생략)</p>	<p><별표18></p> <p>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담보인정비율(LTV)</p> <p>2. (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<u>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%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. 다만,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%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	